
영업손실 보상에 있어서 산정기준의 개선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scoring criteria for compensation of operating losses)

박한석*
Hanseok, Park

<국문초록>

본 연구는 각종 사고 등으로 인해 대체로 수반되는 손해 중 하나인 영업손실 보상에 있어서 그 산정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은 실제의 손실을 거의 대부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로서 가장 큰 부분은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간을 물적피해 복구기간으로 한정한다는 데 있으며, 다음으로 영업현황 자료 등이 있지 아니하거나 충분하지 아니하여 손해액 산정 자료로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와 영업손실을 산정하는 방법상의 문제가 있다.

따라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시 영업손실 보상,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 기업휴지보험의 영업손실 보상 등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보완점을 마련하여, 모든 사고에 있어서 적용할 수 있는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오늘날에는 소규모 영세 사업체라 하더라도 신용카드 등에 의한 매출액의 비율이 상당히 높아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된다면 많은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 국문색인어 : 영업손실, 매출감소액, 매출이익, 영업이익, 고정비(경상비), 변동비, 손해경감비용, 손실회복기간

* 스마트손해사정법인 대표, 전 한국손해사정사회 부회장, 손해사정사

I. 시작하며

음식점을 운영하는 Y씨 가게에 어느 날 음주 운전을 한 승용차 한 대가 돌진해와 유리문과 샷시, 내부시설 및 집기 등을 부수어 순식간에 난장판을 만든 것은 물론 장사를 하지 못할 지경이 되었다.

TV에서나 보던 일이 발생하여 Y씨는 엄청 놀랐지만, 다행히도 사고 차 보험회사에서 쏠살같이 달려와(그 점에 있어서는 좀 신기할 정도였다) 부서진 곳 여기 저기 원래대로 다 수리해주고, 집기 등을 돈으로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다.

문제는 당분간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할 손실이었는데, 보험회사 보상담당자는 “일단 장사를 해라” “어지럽혀져 있는 것은 다 치워줄 테니, 문 없이, 정수기 없더라도, 그냥 장사를 해라” “그렇게 하더라도 일 못한 기간을 좀 늘려 충분히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다.

보험회사 보상담당자의 말대로 어지럽혀진 가게 내·외부를 대강 수습하여, 이를 후부터 한쪽에서는 비닐 치고 공사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장사를 했다.

열흘쯤 걸려 공사가 마무리되었고, 가게도 냄새는 좀 풍겼지만 그런대로 모양을 갖추게 되었다.

그런데 문제는 영업손실의 보상이었다. 수리를 다 하고 나니 보험회사 보상담당자 왈 하루 6만원씩 2일간 일 못한 손해(이를 후부터는 한쪽 공사하면서 영업했다고 하면서) 12만원을 보상해주겠다는 것이었다. 가게 수리 및 집기 보상도 별로 맘에 안드는 상태인데, 영업손실 보상액에 Y씨는 화가 나기 이전에 하도 어이가 없어 말문이 턱턱 막혔다.

그렇다면 영업손실은 이 같이 적은 금액일 수 밖에 없을까?

또 영업손실은 영업 못한 기간만 보상받아야 하는 것일까?

우리 주변에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보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 의외로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사고로 점포 등의 영업을 중단되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는 상당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¹⁾, 2011년 전국규모의 블랙아웃으로 전국의 많은

1) 자동차사고 및 화재사고 등으로 건물 또는 내외부 시설이 손상되어 영업 내지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태풍, 집중호우, 지하굴착 등으로 인한 침수 및 도로붕괴, 지하공동구화재 등으로 전력 및 가스 공급 등이 중단되어 영업을 중단되거나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다.

공장 및 점포 등의 영업을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고²⁾, 서해안유류피해사고 역시 인근 관광업종의 영업을 큰 영향을 받는 사고가 있었다³⁾.

또 각종 목적으로 토지를 매매하거나 수용 당하는 경우에 있어 점포 및 공장의 폐쇄 또는 이전으로 인해 영업을 폐지되거나 중단됨으로써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 같이 사고로 또는 토지의 매매 및 수용 등에 의해 영업을 폐쇄 혹은 중단되거나 수입(매출)이 감소될 경우 영업손실의 발생은 불가피한데, 그리고 영업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배상 혹은 보상이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도 불구하고, 영업손실의 배상 혹은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리고 영업손실 산정 및 보상에 관한 분쟁은 날로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의 개선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II. 현행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의 실태

1.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

위에서 예를 든 사례의 경우에 있어서 자동차보험 보상실무참고서 상의 영업손실 보상기준은 세법상 수입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연간사업소득금액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를 공제하고, 고정비를 가산한 금액을 휴업일수 기간 동안 보상하며, 영업손실 인정기간은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기간으로 하되, 최대 30일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세법상 수입액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지 아니하거나 노점상 등 고정된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 상당액을 휴업일수 기간 동안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 2) 2011년 9월 15일 대구의 전국순환정전사고로 전국의 많은 공장, 점포, 양식장 등의 물질적 피해 및 영업중단피해가 발생하였다.
- 3)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 서해바다에서 유조선 충돌로 신고 있던 원유가 흘러나와 서해안 일대를 뒤덮으면서 인근 지역에서 펜션 등 숙박업, 음식점업, 도소매업, 양식업, 수산물 가공 및 판매업 등의 영위에 상당한 영향을 준 대형 사고이다.

따라서 위의 예에서 Y씨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 신고를 했었고, 연간 총수입금액(총매출액)은 1억 4천만원, 연간사업소득금액은 1,320만원으로 신고되어 있었다면, 그리고 Y씨 사업장의 임차료는 월250만원, 급여를 지급하는 종업원은 별도로 없으며(부부가 같이 운영하며), 휴업일수 2일을 인정한다면,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금은 다음과 같다.

$$\text{영업손실액} : (12,900,000\text{원} + 30,000,000\text{원}) \times 2/365 = 235,068\text{원}$$

Y씨의 연간사업소득액 중 소득세 및 주민세는 편의상 30만원으로 추정하였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영업손실 보상평가지침(이하 “토지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기준”이라 한다)에 의한 보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관련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한 영업폐지 및 휴업에 대한 손실(영업손실)의 평가는 “(영업이익 × 휴업일수) + 고정비 + 고정자산·원재료·제품 및 상품 등의 매각손실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사례에 있어서 Y씨가 입은 영업손실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에 의하면 고정비는 인건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유무형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 보험료(화재보험료 등), 광고선전비, 기타 이와 유사한 휴업 기간에도 계속하여 지출하게 될 비용이라고 하고 있으며, Y씨 사업장의 경우 제세공과금 년 30만원, 임차료 월250만원, 고정자산은 최초시설비 5천만원, 보험료 년30만원으로 하며, 휴업일수는 2일로 한다. 이외 고정비는 없는 것으로 한다.

$$\text{영업손실액} : (13,200,000\text{원}/365 \times 2) + [(0 + 300,000 + 30,000,000 + 5,000,000 + 300,000 + 0 + 0) \times 2/365] = 267,396\text{원}$$

3. 기업휴지보험에 의한 영업손실의 보상

기업휴지보험에서 영업손실 손해액 및 보험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토록 하고 있다.

손해액 = 사고로 인한 매출감소액 × 이익률 - 지출되지 않은 보험가입경상비
 사고로 인한 매출감소액 = 사고 직전 12개월 중 피해복구 기간에 상응하는 전
 년 기간의 매출액 - 복구기간의 실제 매출액
 이익률 = 손해발생 직전 회계연도 1년간의 영업이익 및 보험가입경상비/손해
 발생 직전 회계연도 1년간의 매출액

따라서 기업휴지보험에서 영업손실 손해액은 매출감소액에 영업이익과 경상비⁴⁾의 매출액에 대한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사고로 인해 지출이 감소하는 적하보험료나 운송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그리고 이는 결과적으로 사고로 인한 매출감소액에서 변동비를 뺀 금액과 같게 되며, 이 같이 산출된 손해액에 손해 경감을 위해 소요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을 더한 금액이 기업휴지보험에서 지급할 영업손실 보험금이 된다.

기업휴지보험에 있어 판매업의 경우 매출원가는 경상비 해당항목이 없고,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경상비 항목이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에는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모두에 경상비 항목이 있다.

매출원가의 경상비 항목은 노무비(임시 고용직 노무비는 제외), 감가상각비, 수선비, 제세공과금, 부동산임차료, 여비·교통비·통신비, 잡비가 되며, 보험료 중 화재보험료, 자동차보험료는 경상비에 해당하나 적하보험료, 운송보험료는 변동비에 해당하고, 변동비는 재료비, 운임, 외주가공비가 해당하고, 전력비, 가스·수도비 역시 변동비에 해당하나 기본전력비, 기본가스료, 기본수도료는 경상비에 해당한다.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경상비 항목은 임원 및 직원급여, 복리후생비, 광고선전비, 감가상각비, 임차료, 수선비, 사무용 소모품비, 통신비가 되며, 변동비는 발송배달비, 판매수수료가 된다.

그러므로 위 사례에 있어서 Y씨가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이후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기간⁵⁾ 동안의 매출액에 피해복구 기간에 상응하는 전

4) 기업휴지보험에 있어서 경상비는 보험에 가입할 때 미리 구분하여 그 가입금액을 정하게 된다.
 5) 기업휴지보험에서 영업손실 산정 대상으로 하는 복구기간은 건물이나 내부시설 등의 피해를 복구하는 기간이 아니라, 매출액이 정상 궤도에 이르는 기간의 매출액 복구기간, 즉 실질적인 손실회복기간을 말한다.

년도의 매출액(또는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기대매출액)을 확인해야 하며,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 중 경상비와 변동비를 분리하여 각각의 금액을 산정하는 한편 이익률을 구해야 한다.

그런데 이는 사고 전 최소한 1년 및 사고 이후 손실을 주장하는 기간의 영업 현황자료가 필요하며, 또한 그 내용을 꼼꼼히 분석해야만 가능하다.

여기서는 편의상 대략적으로 추정해보기로 한다.

Y씨가 운영하던 음식점의 사고 전 1년간의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납부를 위한 세무신고금액은 년 1억 4천만원이었으나 실제 연간매출액은 1억 6천만원이었으며(월평균 1,333만원), 사고 후 1개월간 사고가 없었더라면 얻었을 수입액(사고 1년 전 동일기간과 비교한 기대매출액) 1,500만원이었고, 사고 후 1개월간 실제 매출액(사고 1년 전 동일 기간과 사고 후 기간 동안 일별 매출액을 확인한 결과)은 920만원이었고, 1개월 이후 기간에는 사고 전 대비 사고 후 매출 감소액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고로 인한 매출감소액은 580만원이었으며, 회계장부를 검토한 결과 사고 전 1년간 변동비(음식물 재료대 구입비 등)는 6,300만원(39.38%)이었고, 영업이익은 1,750만원(10.94%)이며, 경상비는 7,950만원(49.69%)이었다. 사고로 인해 보험료가 절감되는 적하보험료 및 운송보험료는 없었으며, 손해 경감을 위해 별도로 지출한 비용은 없었다.

확인된 내용을 근거로 영업손실 손해액 및 보험금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이 3,515,960원이 된다.

$$5,800,000\text{원} \times 60.62\%(10.94\% + 49.69\%) = 3,515,960\text{원}^6)$$

Ⅲ. 영업손실 보상 산정기준의 문제점

현재 영업손실을 산정하는 기준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3가지 방식이 있으나, 이들 방식은 저마다 각각 문제점을 안고 있다.

6) 서해안 유류피해로 인한 음식점 등의 손해액(보상금)은 매출감소액 × (1-변동비)의 방식에 의해 산정되었으며, 이는 기업휴지보험 영업손실 손해액 산정방법과 동일한 결과를 얻게 된다.

1. 영업손실 산정 시 손실기간의 제한

자동차보험 보상기준과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기준은 영업손실 산정에 있어 그 인정 기간을 미리 인위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실제의 영업손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영업손실 인정 기간에 대한 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사고 등으로 인해 파손된 건물 또는 내부시설을 수리하거나, 토지 수용 등으로 영업장소를 이전하게 되는 경우, 그 수리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기간 또는 영업장소 이전에 소요되는 기간은 비교적 명확히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실제의 영업손실은 파손된 건물 및 시설 등의 피해복구기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수리 복구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지속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영업손실을 물적피해의 복구기간으로 한정하는 것은 실제의 영업손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을 미리 확정하는 것 또한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예컨대 파손된 건물 또는 내부시설을 복구했다 하더라도 고객들은 해당 업소가 다시 영업을 언제쯤 정상적으로 재개할 것인지 잘 알지 못하며, 건물 및 내부시설의 수리복구 이후에도 당분간 해당 영업소 이용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그 기간은 사업내용별로, 시기별로, 또한 지역별로, 고객의 성향별로 다를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손실을 산정함에 있어 영업손실 산정 기간을 미리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한 다음 비로소 손실액을 산정하는 방식 또는 구조이어서는 곤란하며, 실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모든 기간이 애초에 영업손실 산정에 포함되도록 하는 방식 또는 구조여야 한다.

2. 손실액 산정 요소의 부적절 및 부적용 가능성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3가지 영업손실 산정 방식의 기준은 대체로 동일하다. 영업이익⁷⁾에 고정비⁸⁾를 더해 영업손실을 산정한다는 측면에서 그러하다.

7) 자동차보험 영업손실 보상기준의 경우 영업이익이 아닌 연간사업소득금액(개인사업자 소득세과

그러나 그 구체적 내용 및 적용에 있어서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으며, 그것이 바로 실제의 영업손실액 산정과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1)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의 문제점

첫째, 자동차보험 보상기준 상 영업손실은 연간사업소득액에서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제세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부분이다. 영업손실 산정에 있어 사업자의 소득세 및 주민세 등 제세액을 제외하는 것은 결코 타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은 영업손실 산정 요소 중 하나인 영업이익 대신 연간사업소득금액을 적용하고 있다. 영업이익과 연간사업소득금액은 다를 수 있어 실제의 영업손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

셋째,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은 영업이익 또는 연간사업소득금액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자의 실제의 영업현황 등을 반영한 실질적인 금액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가 세무서에 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더구나 세무서에 신고된 금액이 없을 경우 일용근로자 임금을 아예 1일당 영업손실액으로 간주한다는 것이다⁹⁾.

넷째,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은 영업손실 산정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고정비에 대하여 세부내용이 규정되지 않아 영업손실 산정에 있어 고정비 대부분을 반영하지 않거나, 고정비를 반영하더라도 고작해야 건물임차료를 반영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위와 같은 이유로 자동차보험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은 형편없는 금액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2)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기준의 문제점

세표준액)에 고정비를 더한 금액으로 영업손실액을 산정한다는 점에서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영업이익에서 소득세법상의 사업자의 인적공제 등을 한 금액이 연간사업소득금액이 되기 때문이다.

- 8) 회계상 고정비를 기업휴직보험에서는 경상비로 표현하고 있다.
- 9) 이 경우 고정비 보상은 아예 반영하지 않게 되는데, 현실에서는 많은 사례에 있어 이 같은 방법에 의해 영업손실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다.

토지 수용 시 영업손실 보상기준의 문제점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보상일 수 또는 휴업일수를 미리 정해두고 있어 실제의 손해액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폐업 내지 휴업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액 산정에 적합한 방법이며, 휴업하지는 않았으나 매출감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의 영업손실 산정에는 적합하지 아니하다.

둘째, 고정비에 대한 세부적 내용이 없어, 실제 영업손실 산정에 있어 그 반영에서 누락되거나 반영 여부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3) 기업휴지보험에 의한 영업손실 보상기준의 문제점

기업휴지보험에 의한 영업손실 산정 방법은 대체로 현실의 손해액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

첫째, 영업손실 산정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음으로써 실제의 피해 복구기간 전체를 영업손실 산정 대상기간으로 하고 있으며, 둘째, 영업손실액 산정 방식에 있어서도 수입(매출)감소액에서 변동비를 차감하는 방식¹⁰⁾을 사용함으로써 실제의 손실액 산정에 거의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휴지보험 영업손실 산정 방식은 경상비 항목이 지나치게 많고, 복잡하며, 주관적 판단 가능한 부분도 있어, 이들 요소들을 제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또한 판단자마다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등에 대한 염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¹¹⁾.

즉, 기업휴지 보험에서 영업손실 산정에 반영해야 하는 경상비는 노무비, 감가상각비, 부동산 임차료 등 상당히 여러 가지인데 이들 경상비 항목을 누락 없이, 정확하게 구분하고, 또한 정확히 금액을 산정하여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인지, 더불어 노무비, 전력비, 수도·가스비 등은 경상비와 고정비가 섞여 있게 되는데, 이들을 금액적으로 구분해 낼 수 있는지, 또한 구분해 내더라도 주관적 판

10) 변동비와 경상비의 구분이 동일한 것을 전제로 한다면 동일기간 매출액에서 변동비를 뺀 값과 영업이익에 경상비(고정비)를 값의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

11) 그러나 이는 자동차보험 보상기준이나 토지 수용시 보상기준과 비교할 경우 비교적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단 등에 의한 차이 없이 항상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여부에 대한 문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 등으로 인한 영업손실액 산정은 기업휴지보험에 의한 보상기준이 비교적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IV. 영업손실 보상의 합리적 산정기준

이상으로 우리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영업손실 산정 방법 및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업손실 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점은 영업손실액을 산정하는 대상 기간으로, 영업손실 산정기간을 건물이나 시설의 복구기간으로 한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건물 및 시설 등의 복구기간은 눈에 드러나며, 비교적 쉽게 그 기간을 구할 수 있지만, 사실은 영업손실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건물 등의 복구기간이 아닌 매출의 복구기간(회복기간)으로, 영업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출의 복구기간이 모두 포함되도록 해야 하며, 따라서 영업손실 기간을 미리부터 특정하는 방식은 곤란하다는 것이다.

둘째, 영업손실 산정 방식은 영업손실액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수입(매출)감소액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영업손실액은 사고 등의 영향으로 인한 수입감소액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영업손실 산정방식은 수입(매출)이 감소함으로써 사업자가 입게 되는 실질적인 손실을 비교적 정확하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산정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즉, 수입(매출)이 감소한 경우에 있어 그 수입(매출)감소액이 모두 손해액이 되지 않고, 수입의 감소에 따라 절감할 수 있는 비용¹²⁾이 있게 되므로, 그 비용을 영업손실 산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식이어야 한다.

넷째, 영업손실은 수입(매출)의 감소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하락방지 비용(손해경감비용)의 지출로 나타날 수도 있고¹³⁾, 상품이나 재료비 등의 처분으

12) 매출이 줄어들어 따라 매출을 올리기 위해 소요되었을 상품구입비, 재료비, 전력비, 수도·가스비 등이 절감되었을 수 있다.

로 인한 손실로 나타날 수 있으며¹⁴⁾, 고정자산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거나, 임시 시설의 설치비용이 소요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로 이전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시설 및 상품 등의 이전비용 등이 소요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지출비용, 또는 처분 손실 등도 모두 영업손실 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반영한 영업손실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영업손실 산정기준

영업손실액 = 수입(매출)감소액 - 변동비(절감경비) + 손해경감비용 등
 수입감소액 = 기대매출액- 수입(매출) 회복기간 실제 매출액

2. 영업손실 산정기준의 적용

1) 수입(매출)감소액

영업손실액 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영업손실액 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기 때문이다.

영업손실은 사고로 인한 손실에 한해 산정되어야 한다. 사고 이외의 원인으로 인한 수입(매출)감소액이 영업손실 산정에 포함되어서는 아니된다. 예컨대 경제침체 영향 내지 조류독감 또는 구제역 등으로 인해 수입(매출)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업손실 산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업손실액 산정을 위한 기대매출액은 사고가 없었다라면 얻었을 매출액이 되므로, 사고 후 매출회복기간(영업손실액 산정 대상기간)에 상응하는 사고 전년도 동일 기간 매출액으로 한다.

다만 기대매출액 산정기간은 연속되어야 하며¹⁵⁾, 사고 전 3년간 영업현황 등

13) 손해경감비용은 그 자체로 바로 손실액이 된다.

14) 사고로 인해 판매하지 못하여 남게 된 잔여상품이나 재료대 등을 매각처분하는 경우 등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15) 수입(매출)감소액을 산정하는 방식은 일별, 월별 등의 단위로 산정 가능하나, 그 산정기간은 시작일과 끝일 사이에 공백기간이 있어서는 아니된다.

을 감안하여 매출의 상승을 또는 하락을 반영할 수 있고, 계절적 특수성으로 인해 사고 후 기간과 사고 1년 전 동일 기간의 수입(매출)액 비교가 곤란할 경우¹⁶⁾에는 기대매출액 산정기간은 사고 1주전 또는 1개월 전 매출액으로 할 수 있다.

2) 변동비

변동비는 매출이 감소함으로써 절감할 수 있었던 비용을 말한다. 대체로는 기업휴지보험에서 분류한 것과 같다. 다만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매출원가와 판매비 및 일반관리비의 변동비 및 고정비의 원칙적인 구분에 따르기 보다는 실제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¹⁷⁾.

예컨대 노무비 또는 인건비에 있어서는 일용직 등으로써, 매출감소에 따라 일용직 사용이 줄어들게 됨으로써 지출이 줄어든 비용은 변동비에 반영하여야 한다.

한편 변동비는 모든 경제 주체가 효율적 운영을 한다는 전제 하에 해당 사업장의 영업형황 등을 반영하여 각 지출항목 및 금액에 대하여 변동의 여부 및 금액, 매출액에 대한 변동비율 등을 구분하고 적용할 수 있으나, 해당 사업장의 운영 등이 정상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인근 지역 및 유사업종의 평균비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

3) 손해경감비용 등

사고 등에도 불구하고 수입(매출) 감소 방지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광고를 하거나,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임시 시설을 설치하거나 시설을 보완할 수도 있다. 또 신속한 처리가 요구되는 상품이나 재료 등의 경우 구입비용 이하로 처분하는 손실이 발생하기도 한다.

16) 예컨대 추석 특수 등의 효과가 있는 업종의 경우 사고 후 기간과 사고 1년 전 동일기간을 비교하기 곤란한 경우가 있다.

17) 사업상 지출된 비용은 변동비와 고정비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영업손실액 산정에 있어서는 회계학상의 원칙적인 구분이 아닌 실제의 현황(실제 비용지출이 감소했는지 아닌지의 여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업손실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손해방지 및 손해 경감을 위해 필요하고도 유익한 지출비용 또는 처분 손실 등을 확인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

V. 글을 마치며

현재 사용되고 있는 영업손실 산정기준 등은 올바르고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다. 따라서 각종 권리 주체들이 여러 유형의 사고로 인해 영업손실을 입게 되더라도 정당한 배상 또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많은 피해민을 양산한 서해안유류피해사고¹⁸⁾로 인근 지역 펜션, 음식, 도소매,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이 그랬고, 우리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곤 하는 화재¹⁹⁾, 가스누출사고²⁰⁾, 전국 규모 내지 소규모 지역의 정전사고²¹⁾, 집중호우 및 상수도 파열 등으로 인한 침수 등의 사고²²⁾로 인한 사업자들의 영업손실 보상은 고작해야 실제 손해액의 1/5 ~ 1/10 수준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았고, 이는 아직도 여전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영업손실 등의 산정에 있어서 세무 당국에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납부를 위해 자진신고 된 매출액 또는 소득액만을 근거로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제는 여러 가지 사업현황 자료 및 신용카드사용 실적 등으로 인해 수입 및 지출의 내용과 금액이 거의 100% 가까이 확인 가능해지고 있으므로, 실제의 손실에 의한 배상 및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곡 없는 진실된 사회의 건설이 건전하고 올바른 사회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18)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 서해바다에서 유조선 충돌로 신고 있던 원유가 흘러나와 서해안 일대를 뒤덮으면서 약 13만명에 이르는 피해자가 발생한 대형 사고이다.

19) 2003년 2월 18일 발생한 대구지하철화재는 물론 그 외에도 크고 작은 화재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20) 2012년 구미불산가스 누출사고가 있었으며, 2006년 서울 종각역 일산화탄소 누출사고 등이 있었다.

21) 2011년 전국 규모의 순환정전사고가 있었고, 그 외 지하공동구 화재 내지 건물 도로의 파손 등으로 인한 정전, 가스공급 중단 등으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으로 인한 영업손실이 발생하는 사고가 빈발하고 있다.

22) 매년 반복되는 태풍 및 집중호우, 상수도 파열 등 각종 사고 등에 의한 공장 상가 등의 피해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참고문헌>

대한손해보험협회, “자동차보험실무참고서” 1991 : 264-272

한국감정평가협회, “영업손실보상평가지침”, 1-12

이종섭, “기업휴지보험” 보험연수원, 2004.